

보 상 계 획 공 고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강림면도102호(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22일

횡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종류 : 강림면도102호(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일원
- 다. 사업의 규모 : 농어촌도로 확포장 L=4km
- 라. 사 업 기 간 : 2020년 01월 ~ 2022년 12월
- 마.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2. 보상계획 및 열람

- 가. 보상대상 : 편입토지 및 편입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다. 열람기간: 2020. 05. 27. ~ 2020. 06. 10.(15일간)
- 라. 열람장소: 횡성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계(☎033-340-2831)
- 마. 이의제기: 공고되거나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시기

-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5. 감정평가

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2020. 06. 11. ~ 2020. 07. 10.(30일간)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내라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있다면 감정평가 가능하오니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황성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계(☎033-340-2831)로 문의 바랍니다.